



## 전납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당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사건에서 법원은 전납약정 체결의 인정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에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정황적 사정만으로 전납약정을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200395 판결).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4. 9. 1. 원고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전부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전납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2017. 9. 1.자로 의약품 공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납약정을 포함시킬 경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전납약정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되 전납약정은 계속 유지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업체와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을 납품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전납약정을 위반하고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납약정은 의약품 공급계약에서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항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약정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므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약품 도매업체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납약정은 의사들의 약품선택권을 제한하고, 의약품 도매상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비자금 조성 및 탈세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거래형태이기 때문에 전납약정 체결의 인정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에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정황적



# LK PARTNERS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사정만으로 전담약정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서 서면으로 명시해 두어야만 예상하지 못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 수가 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걸 변호사/회계사

TEL. 02 565 9801

E-mail. [dkjeong@lkpartner.co.kr](mailto:dkjeong@lkpartner.co.kr)